

2017년도 8월 10일 국회토론회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2017. 8. 10.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 차

□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1
□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 역사	3
□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	5
□ 「국립대학법」의 주요 내용	6
# 첨부 「국립대학법」(안)	16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 헌법과 법률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
- ▶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
- ▶ 심지어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문화시키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립대학의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국립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등)으로 규정되어 교수 등 대학구성원이 대학자치에서 배제되고 있음

○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정책 특히 선진화 정책의 폐해를 해결할 필요성

- ▶ 교육부는 1995년 이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대학의 관계는 상하관계,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재편
- ▶ 이런 정책으로 학문자유와 대학자치가 위기에 빠졌고, 법인화정책과 선진화정책으로 국립대학의 존재가치가 무너지고 국립대학이 내적으로 무너졌는데, 이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립대학의 운영원리를 규정할 필요

-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영조물 혹은 영조물 법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권을 갖는 법률상의 독립적 주체(공법상 사단)로 설정할 필요, 즉 대학은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시에 국가기관임을 규정
-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재정의 공적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률조항이 필요

- ▶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 ▶ 「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 설치령」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대학자치가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국가와 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 대학자치조직을 법제화하고,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상생적인 미래를 위해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입시의 혁신을 위해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

- ▶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공립대 연합체제(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
- ▶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유형별로 학생 선발을 단순화·표준화·공정화하고, 커리큘럼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필요

- ▶ 현재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 회계법」 등 여러 법률이 난립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 따라서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을 입법할 필요

□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 역사

○ 2016년

- ▶ 4월 29일: 국교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결정, 구체 사안은 정책위원회에 일임
- ▶ 7월 12일: <고등교육법체계 확립을 위한 「대학법」 제정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교문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와 야당(더민주당, 국민의 당)에 대해서 국립대학법 필요성 설명하고 공유함
- ▶ 10월 20일: 대학정책학회 창립심포 주제발표(임재홍, 대학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등에서 국립대학법 입법 필요성 강조
- ▶ 12월 1일: 제1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자치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12월 23일: 제2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재정과 국립대학법(안)(충남대)

○ 2017년

- ▶ 1월 13일: 제3차 정책포럼 대학회계, 국립대연합체제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2월 3일: 제4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 총장선출, 국립대학운영원리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2월 13일: 국교련 임시총회(제주)에서 정책포럼 진행 사항 보고
- ▶ 3월 10일: 국교련 임시총회(전남대)에서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설치 결정
- ▶ 4월 7일: ‘제1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4월 19일: ‘제2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4월 29일: ‘제3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5월 12일: ‘제4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초안 확정)
- ▶ 6월 5일: 국교련 집행부 회원교에 ‘국립대학법 기초법안 준비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하여 6월 16일 마감함(13개 회원교에서 의견을 제출함)
- ▶ 6월 20일: ‘제5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6월 22일: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국립대학법안 및 의견수렴 보고하고 향후 일정 보고

○ 향후 일정

- ▶ 7-8월 권역별 토론회: 교수회집행부 + 권역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내부적인 입장 정리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계기로 활용, 최소 3회(예: 서울-부산-광주)로 개최 예정
- ▶ 9월중 토론회: 권역별 국립대학 교수를 상대로 한 설명회, 최소 3회(예: 대전-대구-전주)로 기획
- ▶ 국회 공청회

□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

○ 국립대학법안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국립대학의 권리와 책임[제6조~제11조]

제3장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기구[제12조~제36조]

제1절 대학자치조직과 대학평의회

제2절 총장

제3절 대학조직

제4장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제37조~제65조]

제1절 재정과 회계의 원칙

제2절 재정위원회

제3절 대학회계

제4절 국립대학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5장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와 국립대학평가원[제66조~제86조]

제1절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

제2절 국립대학평가원

제6장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와 국립대학 간 업무협조[제87조~제89조]

제7장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준[제90조~제91조]

제8장 공립대학 적용의 특례[제92조~제93조]

부칙[제1조~제4조]

□ 「국립대학법」의 주요 내용

○ 국립대학법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규정

제4조(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보장 규정

제6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립대학에서 다음 각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1. 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공표할 자유
2. 교수의 자유
3. 의견 표현과 학습의 자유
4.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제7조(대학의 자치) ① 국립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② 국립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치권을 갖는다.

1. 대학에서의 의사결정
2.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
3. 대학의 인사
4. 대학재정의 편성과 운영

5. 대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6. 이외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③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대학구성원의 권리 보장 규정

제9조(대학구성원의 권리) ① 국립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5조의 권리와 자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②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동의 없이 학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구성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명시

제1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① 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별이나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

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 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립대학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과 교육, 장학 등의 계획 및 결과를 시행령에 따라 매년 국회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자치기구의 법적 지위 보장 규정

제12조(대학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① 대학구성원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대학구성원은 교수회·학생회·강사회·조교회·직원회 등 자치조직을 구성할 자유를 갖는다.

- ③ 자치조직의 종류와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의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제13조(대학평의회의의 지위)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제14조(대학평의회의의 권한)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후보자의 선출방식 결정
4. 총장 해임의 건의
5. 학칙으로 정하는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와 해임 결정
6. 대학 조직의 설치, 폐지와 변경
7.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8. 대학의 예산안의 확정 및 결산 심사
9.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5조(대학평의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집행기구로서 총장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제16조(총장의 지위)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임을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한다.

제17조(총장의 권한) ① 총장은 법령과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권한과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총장 등 보좌기관,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장, 부속시설이나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학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학평의회의 의결에 대한 총장의 거부권) ① 대학평의회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 사항을 그 총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에는 총장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의결 사항이 이송되면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장은 위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대학평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 ⑤ 총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⑥ 총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총장이 확정 후 5일 이내에 의결 사항을 공포하지 아니하면 대학평의회 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총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즉시 대학평의회 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대학평의회 의 의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총장후보자의 선출)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총장의 임용)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국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국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정하거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또는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립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재정과 회계

제37조(국가의 재정책임)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립대학의 유형, 국립대학들 사이의 형평성, 경제발전협력기구 회원 국가의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정교부의 기준과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
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기금회계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회계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연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④ 국립대학의 총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종합재무제표 및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 ③ 재정위원회 위원의 4분의 1(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제3항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학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에서 추천한 교원·직원 및 재학생
-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재정위원회의 권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 2.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3.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5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
2.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3.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6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가와 국립대학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재정·회계 자율의 보장
2.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3.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4.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5. 재정건전성의 확보
6. 건전하고 투명한 예·결산의 운영

○ 국립대학 사이의 협의체 설치 및 자율결정

제66조(국립대학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국립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협의회의 회원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제67조(국립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 ① 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립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협의

2. 국립대학의 기관인증평가
 3.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국립대학의 기초학문육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 개선의 협의
 5.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그 밖에 국립대학 간 협조에 관한 업무의 시행
- ② 교육협의회는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수준의 상향표준화를 통한 대학서열의 해소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호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기관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협의회에 국립대학 평가원을 둔다.
- ④ 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평가

제85조(국립대학평가원의 설치) ① 교육협의회에 국립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교육협의회로부터 독립된다.

② 평가원은 이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국립대학평가원의 구성) ① 평가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2. 교육협의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
3.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연합회가 추천하는 5인

② 평가원의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선결조건

제87조(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 ① 국립대학 대학평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그 연합회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국립대학 간의 협력) 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으로부터 입시나 입학, 학사 등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공동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 국립대학법 중 설립 운영 기준 강화에 반영

제91조(국립대학 교원 확보기준의 특례 등) ① 국립대학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1인당 학생수(학부 기준) 20인의 범위 안에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유형별로 계열별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 20명

2. 자연과학 15명

3. 공학 15명

4. 예·체능 15명

5. 의학 5명

② 원격대학의 설립과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국립대학법 수정초안

2017.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국립대학법」의 목적은 △국가의 공적 책임 원칙에 따른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의 보장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학문 발전과 인재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이바지로 명시함.

○ 국립대학의 설립에 대해서는 우선적 규율이 필요하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정시 자세한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함

□ 참고

▶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¹⁾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²⁾, 「초·중등교육법」 제3조³⁾ 및 「고등교육법」 제18조⁴⁾·제19조⁵⁾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설치·조직

1)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국교련(2009), 「국립대학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문연구를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에 관한 근거와 책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지식사회에서의 국립대학 법적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독일 대학기본법 제2조 ① 대학은 그 임무에 상응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법치국가 내에서 연구와 교육과 학습과 지속교육을 통해서 학문과 예술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대학은 또한 그 임무에 상응하여 학문적 및 예술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대학은 그 구성원의 지속교육을 촉진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립대학은 예외로 한다.

변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
2. 공립대학
3. 교원
4. 직원
5. 조교
6. 학생
7. 기타 구성원

□ 해설

○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적용 된다. 더불어 제8장에 따라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공립대학에도 적용된다.

○ 서울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법
인대학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아울러 기술대학은 대학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기술대
학설립·운영규정」 제3조)하도록 해 이미 「국립학교 설치령」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외했
고, 각종 학교도 제외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
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변형안1

제4조(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공법인으로 한다.

변형안2

제4조(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갖는다.

□ 참고

▶ 독일 대학기본법 제58조(법적 형식과 자치권) (1) 대학은 대체로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
시에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학은 다른 법률 형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대학은 법률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갖는다. (2) 대학은 스스로 학칙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학칙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제시되어
야 한다.

▶ 「니더작센주 대학법」: 대학은 주의 책임 아래 있고, 자치행정권을 가지는 ‘공법상의 사단’
이며, 사단으로서 구성원이 있고, 구성원들은 대학의 자치행정에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헤센주 대학법」: 대학은 프랑크푸르트대학을 제외하고는 ‘공법상의 사단’인 동시에 ‘국가
의 시설’이다.

▶ 「베를린주 대학법」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대학법」: 대학은 ‘공법상의 사단’이자 ‘국가의
시설’이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대학법」: 대학은 ‘주에 의해 유지되는 공법상의 사단’이다.

▶ 「대학법」(독일, 1997년): 대학을 ‘공법상의 사단’인 동시에 ‘주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
는데, 현행법은 이 중 ‘주의 시설’이라는 지위를 삭제하였다.

▶ 국교련(2009),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제1호의 대학

에 속하는 것으로 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헌법 제31조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독립된 활동영역을 가진 인적·물적 결합체라는 의미의 영조물을 말한다.

제5조(국가의 책임) ① 국가는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문발전을 위해 국립대학과 외국 및 국내 대학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국립대학과 협력할 수 있다.

□ 참고

▶ 국교련(2009), 국립대학법(안) 참조

제2장 국립대학의 권리와 책임

제6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립대학에서 다음 각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1. 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공표할 자유
2. 교수의 자유
3. 의견 표현과 학습의 자유
4.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 참고

▶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독일 대학기본법 제4조(예술과 학문, 연구, 교수 및 학습의 자유) (1) 주와 대학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기본법의 제5조 제3항 제1문장의 규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구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3항, 제1문장)는 특히 문제제기, 방법론의 원칙 및 연구성과의 평가와 그 전파를 포괄한다. 연구의 문제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의 결정은 그것이 연구활동의 조직, 연구계획의 후원과 조율 그리고 연구중점의 생성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이 결정은 제1문장이 의미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 제1 및 제1문장의 규정은 예술의 발전계획과 예술 활동에도 상응하여 적용된다. (3) 교수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3항, 제1문장)는 기본법 제5조 제3항 제2문장의 규정에 무관하게 이행해야 할 교수임무의 범위에서 특히 수업의 시행, 그 내용적 및 방법적 구체화 그리고 학문적 및 예술적 학설을 표현하는 자유를 포괄한다. 교수의 문제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의 결정은, 그것이 교수단위의 조직과 학습 및 시험규정의 제정과 이행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이 결정은 제1문장의 규정이 의미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학습의 자유는, 학습 및 시험규정과 무관하게, 특히 수업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의 수학과정 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점을 설정하는 권리 그리고 학문적 및 예술적 견해를 창출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포괄한다. 학습의 문제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의 결정은 그것이

교수 및 학습업무의 조직과 그 규칙적인 시행 그리고 규정에 따른 학습의 보장에 관련되는 한에서 허용된다.

▶ 베를린대학법 제5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1) 국가의 담당부서와 대학은 대학에서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운 창달을 보장하여, 헌법 제5조 제3항 첫 문장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다. (2) 책임있는 대학기관의 결정은 이 기관이 연구 및 교수업무 조직에 관련되거나 규정에 따른 학습의 보장에 관련되는 한에서 허용된다. (3) 대학기본법 제3조의 조치에 따른 연구, 교수 및 학습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무와 대학 내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으로부터 해제되지 않는다.

▶ 대학 헌장(Magna Charta Universitatum): 대학의 기본원칙으로서 “대학은 자율적 기관”일 것, “교육과 연구는 모든 종류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도덕적이든 학문적이든 독립적”일 것을 천명(기본원칙 1).

▶ 2006년 유럽평의회 의회⁶⁾가 채택한 “학문자유와 대학 자치에 관한 권고”(The Recommendation on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네 가지 일반 원리를 재확인, ① 연구와 교육에서 학문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표현과 행위의 자유, 정보 보급의 자유, 연구수행과 지식과 진리전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② 대학의 제도적 자율은 전통적이고 현재에도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임무에 대한 독립된 의무의 표명이어야 한다. 즉 지적으로 유익한 정책, 좋은 거버넌스, 효율적인 관리 등 ③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에 대한 침해는 언제나 지적 붕괴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침체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만약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하면 고비용과 손실이 야기되고, 대학은 사회의 요구를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된다. 대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만큼 가까이 사회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이 가능하고 장기 관점을 취할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 폴란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Law, 2005) 제4조 ① 고등교육기관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운영상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에 대한 자유, 과학적 연구의 자유, 예술창작의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영국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1988) 제2장(고등교육법과 성인교육법) 202조 ①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과 관련하여, ②항 이하에 따라, 부과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학위원회(University Commissioners)와 같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은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교원들은 법률 내에서 세상의 일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험할 자유가 있다. 또한 이와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논쟁되는 혹은 형편없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해고되어서도 안되고, 기관에서 누리는 특권을 상실해서도 안된다. (b) 자격있는 기관이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을 증진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연구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c)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유럽평의회 의회는 유럽평의회 의 두 개의 법정기관 중 하나이다.

제7조(대학의 자치) ① 국립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② 국립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치권을 갖는다.

1. 대학에서의 의사결정
2.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
3. 대학의 인사
4. 대학재정의 편성과 운영
5. 대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6. 이외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③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참고

▶ 독일 대학기본법 제58조(법적 형식과 자치권) (1) 대학은 대체로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시에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학은 다른 법률 형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대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갖는다. (2) 대학은 스스로 학칙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학칙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8조(국가의 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참고

▶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개정 필요

▶ 독일 대학기본법 제59조(감독) 주정부는 법률적 감독권을 가진다. 그 수단은 수단은 법률로 규정된다. 대학이 국가 과업을 담당하는 동안 법률에 의한 추가적 감독이 가해진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의 자율성의 개념에 대해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결 1992.10.1. 92헌마68.

제9조(대학구성원의 권리) ① 국립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5조의 권리와 자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②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현행 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동의 없이 학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구성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미 권리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종래 특별권력관계 등의 이론에 의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되어 왔고, 학생의 경우 학교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베를린 대학법 제43조(대학의 구성원) (1) 대학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에 대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Personen)

2. 제3자의 재원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대학의 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주업으로 활동하는 인원

3. 명예교수, 객원교수(außerplanmäßige Professoren), 사강사(Privatdozent)

4. 등록 학생

5. 박사학위 후보자(Doktoranden)

6. 강의 피위탁자(Lehrbeauftragte) 및 객원 교원(gastweise tätige Lehrkräfte)

(2) 강의 피위탁자가 베를린 소재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위탁을 받고 있는 경우, 그는 어느 대학에서 그의 구성원권을 행사할지를 선언해야 한다.

(3) 학생 보조인력은 단지 그가 학생으로서 등록된 대학의 구성원이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베를린 자유대학과 훔볼트 대학의 공법적 지체법인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이 법인의 구성원들은 베를린 자유대학과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새로이 규정될 때까지 이 구성원들은 각 대학 중 하나의 내부에서 본 법률 제44조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지체법인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발효한 후에 진입하는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구성원은 진입하는 시점에 두 대학 중 어디에서 구성원의 권리를 행사할지 선언해야 한다.

▶ 베를린 대학법 제44조(대학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대학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구성원이 아니면서 대학에서 부업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에게 대해서도 적용된다.

1. 자신의 전문적인 임무를 담당한다(wahrnehmen).

2. 대학과 그 기관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대학에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처신한다.

3. 누구도 자신의 성, 성적 정체성, 인종, 종족적 기원,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또는 연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신한다.

4. 대학의 자치에 협력(참여)하고 직책을 맡는다. 중대한 이유로 인한 예외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2) 대학구성원들은 자치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그들은 위원회(Gremium)의 구성원으로서 지시와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대학의 인적 대의체(Personalvertretungen)의 구성원은 인사 사안을 담당하는 어떠한 자치 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대학행정의 관리직역자(leitende Beamte) 및 직원(Angestellte)은 이사회(Kuratorium)나 대학평의회(Akademischer Senat)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직역자 및 직원의 범위는 고용당국(? Dienstbehörde)이 결정한다.

(4) 대학의 위원회(Gremium)에 선출된 학생과 부업적으로 활동하는 교원인력(Lehrkräfte)에 대한 회의비의 지불은 법령으로 규정된다. 이 법령은 대학을 담당하는 주정부의 행정부서가 대학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정부의 내무부 및 재무부와 합의하여 발표한다.

(5) 대학평의회와 그 상설 위원회(Kommission), 대학본부(Hochschulleitung: 총장), 이사회(Kuratorium), 학부 및 학과평의회(구성원들과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시한부로 대학과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위원회(Frauenbeauftragte)의 구성원들은 신청에 의해 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또는 여성위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시간을 인정받되 자신의 근무시간에 2분의1까지 산입되지 않는다. 위 1문에 따라 이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단지 1회만 산입될 수 있다.

(6) 대학평의회, 이사회, 학부 및 학과평의회(Fachbereichs- und Institutsräten) 및 열거된 기관의 상설위원회 내부 기타 직원들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 日本大学の 대학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人権侵害防止ガイドライン”⁷⁾: 인권침해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상의 평등, 사상·신조·양심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차별적 취급, 프라이버시의 침해, 취학·취업에 관한 기회균등이나 환경확보, 기타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개인의 존엄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도 이 지침이 금지하는 인권침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10조(성평등) 국립대학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

1. 학습, 직업 및 가정의 양립
2. 교수임용절차
3. 여성 및 젠더연구
4. 교직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각종 위원회의 구성

7) http://www.nihon-u.ac.jp/about_nu/effort/human_right/guideline/

6.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참고

▶ 베를린 대학법 제5조a

제1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① 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별이나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과 교육, 장학 등의 계획 및 결과를 시행령에 따라 매년 국회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국립대학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4.7.17., 의안번호 11209) 제5조

▶ 독일 대학기본법 제2조(임무) (4) 대학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후원에 동참한다. 대학은 자녀를 양육하는 학습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다. 대학은 장애 학생이 학습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를 외부의 도움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학은 이들의 체육활동 영역에서 후원을 제공한다. (5) 대학은 대학영역에서 국제적, 특히 유럽적 협력을 진흥하고 독일과 외국 대학 간의 교환을 진흥한다. 대학은 외국학생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다. (6) 대학은 그 임무의 이행에서 서로 간에 그리고 기타의 국가 및 국가가 후원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다. 이는 특히 독일의 통일 후에 요구되는 대학체제에서의 협력에 적용된다. (7) 대학은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진흥한다.

▶ 베를린 대학법 제4조(임무) (1) 대학은 연구, 교수, 학습 및 직업적 활동의 준비를 통해 학문과 예술의 보호와 발전에 헌신한다. 대학은 이 과업에서 민주적인 사회법치국가⁸⁾의 유지에 협력하며, 헌법적인 가치결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2) 대학은 연구와 교수로 인간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조건의 보존과 개선에 기여한다. 대학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여 그 연구결과의 가능한 귀결과 효용성을 검토한다. (3) 자유대학과 훔볼트 대학은 의료영역에서 질병치료 의무를 이행한다. 예술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은 예술 및 학문적 대학으로서 또한 예술적 개발계획과 공적 示現(Darstellung)을 통하여 그리고 예술과 학문의 경계영역에서 교수와 연구를 통하여 그 임무를 이행한다. 학문적 대학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예술계 대학은 예술 후속세대를 그리고 예술대학은 예술 및 학문 후속세대를 아울러 육성한다. 고등직업학교(Fachhochschule)는 그 임무를 특히 응용에 관련된 교수와

8) 독일의 국가성격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사회국가(Sozialstaat)를 표방되어 왔다. 이는 국가가 국가성원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2차 세계 대전이후 그 확장판인 demographischer und sozialer Verfassungsstaat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연구로 이행한다. 주정부는 고등직업학교와 협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고등직업학교 구성원의 연구가능성(기회)을 확장하고, 그 방면의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대학은 지속(평생)학습에 기여하며 평생교육 강좌(개설)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은 그 직원의 평생교육과 보편적인 성인교육을 권면한다. (5) 대학은 그 임무의 범위 내에서 내국 및 외국의 다른 대학 그리고 기타의 연구, 문화, 교육기관과 협력한다. 대학은 그 기관 사이의 지식전파를 촉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획득한 학문적 인식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이용될 수 있는 바에 영향을 미친다. (6) 대학은 그 공공적 봉사를 통하여 특히 각각의 대학에 덜 대표된 인구집단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학은 이들 집단의 입학과 전공분야의 선택에서 조언하고 지원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적 사안과 체육활동을 육성한다. 대학은 특히 외국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한다. (7) 대학은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 및 수학지원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며, 이들의 통합을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학습과 시험의 이행을 위하여 동등성을 유지하면서 불이익상쇄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대학은 여성과 남성이 대학 내부에서 그들의 자격에 상응하는 동일한 발전기회를 가지며 여성에게 과해지는 불이익이 배제되도록 작용한다. (9) 대학은 대학영역에서 국제적, 특히 유럽적 협력을 촉진하고 독일대학과 외국대학 사이의 교환을 촉진한다. (10) 이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임무는 대학을 주관하는 행정부의 법령(Rechtsverordnung)을 통해 대학에 위탁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제1항에서 언급된 임무와 연관될 경우에는 그러하다. (11)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학은 연구와 교수에서 핵심과업이 직접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대학을 담당하는 베를린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가 기업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일에 보수를 제공하고 제3자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대학이 설립한 기업의 업무담당이 인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배제된다. 이 경우 대학의 보증은 투자금이나 업무지분에 한정된다. 주정부의 보증책임은 배제된다. 회계국의 검토권은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보된다. 사영화되는 경우에 인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 기구

제1절 대학자치조직과 대학평의회

제12조(대학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① 대학구성원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구성원은 교수회·학생회·강사회·조교회·직원회 등 자치조직을 구성할 자유를 갖는다.

③ 자치조직의 종류와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안

제12조(대학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① 국립대학의 자치조직으로서 교수회·학생회·강사회·조교회·직원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학구성원들의 자치조직 설립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대학구성원들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결정권을 행사한다.

③ 교수회·학생회·강사회·조교회·직원회 등의 명칭·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참고

▶ 베를린 대학법 제45조(구성원집단의 형성(Bildung der Mitgliedergruppen)) (1) 대학심의 기구에서의 대표를 위해서 대학의 구성원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이 구성된다. 각각의 집단을 구성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교수, 조교수 Juniorprofessor), 또한 시한부로 대학본부(Hochschulleitung)에서 어느 직책을 주업적으로 행사하는 교수,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학문적 또는 예술적 직무의 수행을 휴직하고 있는 교수들, 객원교수(außerplanmäßige Professoren), 명예교수, 사강사(Privatdozent) 및 초빙교수(Gastprofessor)
2. 학문적 직원(akademische Mitarbeiter: 학문적 및 예술적 직원, 특수한 임무를 위한 교원Lehrkräfte, 강의 피위탁자 및 초빙교원, 단 이 초빙교원은 제1호에 따른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3. 등록학생, 박사후보생
4. 기타의 직원

(2) 다수의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구성원의 집단적 귀속성을 위해서는 고용관계, 그밖에 당해 구성원의 결정이 결정적이다. (3) 제1항의 두번째 문장에 의한 구성원집단은 주단위 차원에서 대표자협회(Vertretervereinigung)를 구성할 수 있다.

▶ 베를린 대학법 제46조(구성과 투표권) (1) 개별 구성원집단이 담당하며, 구성원 집단의 내부에서 행해지는 협력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대학내 위원회(심의기관: Gremium)의 구성은 위원회의 임무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질, 역할, 책임 및 관련성에 따라 결정된다. (2) 대학교원은 연구, 예술적 개발계획, 교수와 교원초빙에 관련한 사안에서 결정권능을 보유하는 모든 위원회(Gremium)에서 의석과 투표권에서 다수를 점한다. (3) 연구, 예술적 개발계획, 교수와 교원초빙에 관련한 사안에서 결정권능을 보유하는 모든 위원회(Gremium)의 의결이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른 구성원 집단 중 적어도 한 집단 전체의 투표에 반하여 이루어지면, 당해 사안은 신청에 따라 재심되어야 한다. 개정된 의결은 일러도 1 주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결의는 기한경과 후에 비로소 시행되는 것이 허용된다(유예 집단거부권 suspensives Gruppenveto). (4) 대학 자치기구에 속하는 심의위원회에는 모든 구성원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집단 중 어느 한 집단도 단독으로 의석의 다수를 장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이 정한다. (5) 대학교원의 초빙에 직접 관련

되는 사안에서는 기타의 직원이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심의활동으로 협력한다. (6) 교수자격학위와 박사학위의 성적평가에서 교수외에는 담당 심의기관의 교수자격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구성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및 학문적 직원의 심의참여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7) 심의기관의 구성에서는 여성이 적절히 참여되어야 한다.

▶ 베를린 대학법 제47조(의결) (1) 대학의 위원회(Gremium)는 적어도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의 반이 참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어느 자치기구가 동일한 대상의 처리를 위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새로이 소집되면, 그 소집에서 이 사안이 지적되었다면 모든 경우에서 의결 가능하다. (2) 의결은 유효투표 수의 다수로 이루어진다. 기권은 고려되지 않는다. (3) 연구, 예술적 개발계획 또는 교수 및 조교수(Juniorprofessor)의 초빙에 직접 관련되는 결정은 자치위원회(Gremium)의 다수 외에 또한 동위원회에 속하는 대학교원 다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단계의 투표에서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속한 대학교원 다수로 충분하다. 초빙제안의 경우 그러한 경우에 위원회의 다수로 그 제안을 후속적인 초빙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한 구성원도 비밀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공개 투표가 이루어진다. 초빙제안과 강의위탁의 제공을 포함한 인사상의 사안에서는 항상 비밀투표가 이루어진다. 문서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투표도 허용된다. 이 경우 어떤 구성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 베를린 대학법 제48조(선거) (1) 대학에서의 선거는 자유, 직접, 비밀의 원칙을 준수한다. (2) 중앙 공치기관(Kollegialorgane)과 학부평의회(Fachbereichsrat)의 구성원은 개인화된 비례적대표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로 선출된다. 우편투표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자치위원회에서의 선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공치기관에서 구성원집단의 대표는 각기 그 집단의 소속원에 의해 선출된다. 명예교수, 객원교수, 사강사 명예교원은 단지 적극적 선거권만 갖는다. 동일한 원칙은 강의 피위탁자 및 객원 교수인력에도 적용된다. 예술대학은 예외로 한다. (4) 대학을 담당하는 주정부 행정부는 법령(Rechtsverordnung)에 의해 개인화된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대하여 그리고 적극적 및 수동적 선거권의 행사에 대한 한 원칙(Grundsatz)을 공포한다. (5) 세부 규칙에 따른 선거인단은 선거규정(Wahlordnung)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단 내에서 선거자의 비례적 대표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 베를린 대학법 제49조(임기) (1) 직책담당자와 자치기구의 임기는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 학칙은 학생구성원에 대하여 더 단기적인 임기를 정할 수 있다. (2) 직책담당자는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의 직책을 수행한다. (3) 그 선출이 이론의 여지없이 무효로 선언된 직책 담당자와 자치기구는 새로이 선출된 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긴급한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 이론의 여지없는 선출의 무효선언 이전에 내려진 결정은 집행이 이루어진 한에서는 유효하다.

▶ 베를린 대학법 제50조(공개) (1)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자치기구는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2) 자치기구는 비공개를 결의할 수 있다. (3) 초빙과 교수위탁의 허용을 포함하는 인사상의 사안 및 시험관련 사안에서의 결정은 비공개적인 회의에서 다루어진다. 비공개 위원회 회의의 참석자는 침묵의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병합) 판결: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령은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학생회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이나 교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규정은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학생회나 교수회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3조(대학평의회의 지위)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변형

제13조(대학평의회의 지위) 국립대학에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제14조(대학평의회의 권한)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후보자의 선출방식 결정
4. 총장 해임의 건의
5. 학칙으로 정하는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와 해임 결정
6. 대학 조직의 설치, 폐지와 변경
7.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8. 대학의 예산안의 확정 및 결산 심사
9.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5조(대학평의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해설

▶현재 교수, 학생, 직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강원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등)들에서 교수 비율이 75%를 상회하는 현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특수성과 각 대학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평의원의 구성 비율은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

▶그러나 개별 대학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형안을 2개 추가함

변형안1

제15조(대학평의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수는 평의회 의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회가 없다면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협의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③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수는 평의회 의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안2

제15조(대학평의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의 수는 평의회 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생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의 수는 평의회 의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회가 없다면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협의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④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참고

조향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

제13조(대학평의회) ①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 해임의 건의
4. 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
5.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
7.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③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안2. 의결권과 심의권의 분리

제13조(대학평의회의 지위)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제14조(대학평의회의 권한)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 해임의 건의
4. 대학의 예산 및 결산

②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
2.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3.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대학평의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안3. 심의권만 부여하는 경우

제13조(대학평의원회) 국립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1. 대학 발전계획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 해임의 건의
4. 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
5.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
7.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해설

○ 대학의 최고조직의 명칭을 대학평의회로 할지 아니면 대학평의원회로 할지 논란이 있었으나 국가 권력의 배분 방식에 비추어 의결권을 갖는 경우 대학평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심의권만 갖는 경우 법제상 도입된 대학평의회(사립학교법)의 명칭을 사용한다.

○ 대학평의회 의결권을 둘러싸고는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일부 교육행정기관이나 총장협의회에서는 총장의 의결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기관자치라는 점에서 평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고, 총장에게는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평의회 권한을 의결권과 심의권으로 분리해서 절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평의회가 아니라 대학평의회를 신설하면서 심의권만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

▶ UNESCO(학문자유 권고안, 1997): “학문자유에 적절한 향유를 위해 ... 고등교육기관의 자치가 요구된다. 자치는 학문적 활동, 규범, 관리와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효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율의 정도이고, ... 학문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자치는 학문자유에 대한 기관적 형태이다”

▶ 리투아니아고등교육법(2000년 3월 21일 No. VIII-1586) 제21조(고등교육기관 자치운영조직과 고등교육기관 공적규제조직) ① 국립대학의 학문적 자율의 최고 조직은 대학평의회(Senate)가 되어야 한다. 제22조(대학평의회) ① 대학평의회(Senate)는 대학의 자치법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5년 미만이어야 한다. ② 대학의 학자들, 저명한 예술가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자와 저명한 예술가들도 대학평의회(Senate)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평의회 구성원의 1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대표자들은 학생자치조직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학생자치조직이 없다면 일반학생들의 회의(협의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교수는 평의회 구성원의 반수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대학 총장(rector)은 대학평의회 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몰타 교육법(Education Act, 1991) 제30조 ① 대학의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a) 대학 협의회(Council) (b) 대학평의회(Senate) (c) 학사위원회(Faculty Boards) 제31조 ① 대학은 대학 고유의 행정과 대학의 활동 그리고 대학에 의해 설립된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그리고 내규를 만들 권한이 있다. 제32조 대학 협의회(Council)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부총장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된다. (b) Rector는 당연직 부의장이 된다. (c) 평의회(Senate)를 대표하는 4명의 의원: (d) 평의회(Senate) 구성원이 아닌 교수/연구자들 중에 선출된 2인 (e) 교수/연구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선출된 2인 (f) 대학생들에서 선출된 2인 (g) 장관이 임명한 1인과 Foundation for Theological Studies의 의장이 지명한 1인 (h) 국가의 일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과학, 산업, 사회 부문을 이끄는 대표자들 가운데 수상이 임명한 약간명, 이 인원은 앞서 언급한 (c), (d), (e), (f), (g)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대학협의회(Council)는 대학의 최고집행위원회(supreme governing body)이다.

▶ 스웨덴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Law 1992) 제2장 제2조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조직(governing body of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은 고등교육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의무사항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정부

(government)는 고등교육기관 운영조직의 의장(chairman of the governing body)을 임명한다. 정부는 운영조직의 다수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은 운영조직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 스웨덴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Law 1992) 제2장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조직과 집행위원회의 집행부총장(Vice-Chancellor)의 구성 제1조 고등교육기관의 집행위원회는 의장(chairman), 집행부총장(vice-chancellor) 그리고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부의장(vice-chairman)으로 선출한다. 규정(Ordinance, 1998:1003)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7조 부의장이외의 위원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명된다. 교수들은 기구에 3인의 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교수대표들은 투표로 선출된다. 집행위원회는 선출과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학생들은 집행위원회에 3인의 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제2절 총장

제16조(총장의 지위)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임을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한다.

□ 해설

○ 임기중 65세 정년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은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베를린주 대학법이 그러하다.

▶ 「베를린주 대학법」 제55조(대학의 장의 법적 지위) ② 대학의 장의 직위와 근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종료된다.

1. 임기의 만료. 대학의 장의 근무는 이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가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시기동안 연장된다.
2. 대학의 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종료되는 학기의 종료와 함께 임기도 종료된다.
3. 이하 생략

□ 관련 법령의 개폐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학교의 장)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17조(총장의 권한) ① 총장은 법령과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권한과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총장 등 보좌기관,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장, 부속시설이나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학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 참고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이하 생략

제18조(대학평의회의 의결에 대한 총장의 거부권) ① 대학평의회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 사항을 그 총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의결 사항이 이송되면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장은 위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대학평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⑤ 총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⑥ 총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총장이 확정 후 5일 이내에 의결 사항을 공포하지 아니하면 대학평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총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즉시 대학평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대학평의회의 의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형안1

제18조(대학평의회의 의결과 총장의 거부권) ① 대학평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과 대학평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안과 규정안이 대학평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총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2항의 학칙안과 규정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이송받은 학칙안과 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대학평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대학평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학칙안과 규정안은 학칙과 규정으로 확정된다.
- ⑥ 총장이 제3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학칙안과 규정안은 학칙과 규정으로서 확정된다.
- ⑦ 총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학칙과 규정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따른 확정 학칙과 규정이 총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총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대학평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⑧ 제3항 및 제7항 전단에 따라 총장이 학칙과 규정을 공포한 때에는 즉시 대학평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7항 후단에 따라 대학평의회 의장이 학칙과 규정을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학칙과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⑩ 학칙과 규정 이외의 대학평의회 의결에도 제1항부터 9항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총장후보자의 선출)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해설

○ 국립대학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대해 대학기관이 직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총장후보자의 선출은 대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대학이 자율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주체는 대학평의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 방식 역시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총장의 임용)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국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국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변형안: 교육부의 제청권 일반적 인정시

제20조(총장의 임용)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국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국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국립대학이 순서를 정하여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선순위로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립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해당 국립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국립대학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대학구성원의 자치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해당 국립대학 외의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참고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삭제

제22조(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정하거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또는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총장후보자 선출과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의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의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기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지지 호소

□ 관련 법령의 폐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삭제

제24조(선거사무의 위탁) ① 국립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④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한다.

제25조(총장임기만료와 교원임용)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16조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

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6조(총장의 직무대리)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변형

제26조(총장의 직무대리)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총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 제30조 참조

제3절 대학조직

제27조(부총장) ①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국립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총장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

제27조(부총장) ② 부총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부총장) ②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총장을 임명한다. 부총장의 임기는 학칙으로 정하되, 3년 이하로 한다.

□ 참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5.12.7.) 제11조

제28조(대학원과 단과대학) ①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

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⑦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의견

제4항~제6항 ‘지도’-> ‘교육’으로 수정 필요함

□ 참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 「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 관련 법령의 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본조신설 2011.2.1.]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지명하여 보한다.

제29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제30조(대학의 행정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를 두고,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학칙으로 정한다. 총장은 교원 중에서 처장을, 교원이나 직원 중에서 행정조직의 장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처와 제25조의 부속시설등 및 행정조직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등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대학에 사무처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보안, 관인관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의 집행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총장은 교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중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을 둔다.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⑤ 대학의 조직과 그 보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변형안

제30조(대학의 행정조직)

③ 대학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보안, 관인관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의 집행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총장은 교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중에서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관련 변형안

1. 현행처럼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2. 현행처럼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임명에 대학 총장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3. 사무처장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

□ 해설

○ 국립대학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대부분 교육부 직원으로 임명해 왔는데, 사무국장 임용시 대학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사무국장의 평균 보임기간이 짧아 안정적 대학 경영에 애로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위한 것임

□ 관련 법령의 폐지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

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②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③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제31조(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조직) 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 교무처, 학생처를 두고,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학칙으로 정한다. 총장은 교원 중에서 처장을, 교원이나 직원 중에서 조직의 장을 임명한다.

②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 총무과장을 둔다. 총무과장은 보안, 관인관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의 집행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총장은 교원이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을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처와 부속시설등 및 행정조직에 과를 둔다.

④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 조직과 그 보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교원 등) ① 국립대학에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의 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 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③ 국립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국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학문적 능력과 연구성과를 감안한다. 다만 성별,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립대학의 교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참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

▶ 「국립대학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4.7.17., 의안번호 11209) 제5조제17조

제33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2. 그 밖에 국립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참고

- ▶ 「국립학교 설치령」 제조
- ▶ 「국립대학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4.7.17., 의안번호 11209) 제17조

제34조(직원의 인사) ① 국립대학의 직원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임용하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전보권은 총장이 가진다.

② 국립대학의 직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참고

- ▶ 「국립학교 설치령」 제조
- ▶ 대학교육연구소(2013),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중 , 「국립대학법(안)」 제16조 참조
-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 「국립대학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4.7.17., 의안번호 11209) 제5조

제30조(직원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국립대학의 직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참고

- ▶ 대학교육연구소(2013),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중 , 「국립대학법(안)」 제16조 제2안 참조

제35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공무원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 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 ▶ 「국립대학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4.7.17., 의안번호 11209) 제16조

제36조(부설학교) ① 국립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 참고

- ▶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3조의5

제4장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

제1절 재정과 회계의 원칙

제37조(국가의 재정책임)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의 유형, 국립대학들 사이의 형평성, 경제발전협력기구 회원국가의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교부의 기준과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

- ▶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제29조)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부 장관은 대학운영계획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 행·재정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참고

○ 프라하성명에서는 고등교육을 ‘공익(public good)’으로 간주해야 하고,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⁹⁾

○ Luc Weber는 공적 책임의 정당화 논거로 ① 환경 변화, ② 수준 높은 고등교육과 연구의 필요성, ③ 고등교육기회의 균등한 분배, ④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의 질적 수준의 보장 필요성, ⑤ 헌법과 법률적 구조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¹⁰⁾

○ 정당화 논거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고등교육의 유형적(개인 차원의)¹¹⁾, 무형적(사회가 누리는) 효과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은 노동과 자본만큼 중요한 생산요소이고, 우수한 노동력은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높은 교육수준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증가시키고, 문제를 보다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수준까지 향상시킨다.¹²⁾ 시장논리로는 이런 무형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개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무형적 효과를 강조하면 정치적 가치판단에 따라 무상교육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¹³⁾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
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기금회계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회계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연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④ 국립대학의 총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종합재무제표 및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참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9) They supported the idea that higher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a public good and is and will remain a public responsibility (regulations etc.), ...

10) Luc Weber, "Nature and scope of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Luc Weber and Sjur Bergan(eds),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April 2005, 32-36쪽. 영국이나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그 만큼 개인에 그 책임을 전가했던 사유가 유럽에서는 오히려 공적 책임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11) 개인에게 고등교육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최상의 선택이고, 최고의 실업보험이다.

12) Luc Weber, 33쪽.

13) 프랑스의 공적 의무(public service)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분배되어야만 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Luc Weber, 37쪽.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⑤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9조(국립대학의 재정 책임) ① 국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정

제40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참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정

제2절 재정위원회

제41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③ 재정위원회 위원의 4분의 1(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에서 추천한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정

▶ 「베를린주 대학법」 제64조(이사회(Kuratorien)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을 담당하는 (베를린주) 행정부서의 장
2. 내무 및 재무행정부서 구성원 및 추가로 1개 행정부서의 구성원
3. 주의회의 구성원 4인, 이 경우 의회에 대표되는 정당은 각기 1인의 구성원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4.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집단의 구성원 각 2인

5. 베를린 고용주단체(Arbeitgeberverbände)의 대표 2인 - 이 규정의 예외는 “베를린”알리스-살로몬“ 고등사회복지 및 사회교육학교는 청소년 및 복지단체의 대표 1인

6. 베를린 노동조합의 대표 2인

7. 여성의 권익을 위하는 조직의 대표 1인 및 환경사안을 대표하는 1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성원은 주의회가 의회의 임기 동안 선출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성원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③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의한 구성원은 주의회 단체의 추천으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들은 전업적으로 대학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7호에 의한 구성원들은 주의회가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평의회는 제안(후보추천)을 할 수 있다.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이사회에 속하는 주행정부의 구성원들은 차관이 대표할 수 있다. 기타의 구성원들은 동시에 선출될 수 있는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주행정부의 어느 구성원 또는 어느 차관이 회의 참석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는 이사회에 속하는 주행정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주행정부의 어느 구성원에는 1표 이상이 위임될 수 없다.

⑥ 총회 또는 대학평의회 구성원들은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42조(재정위원회의 권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2.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3.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5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
2.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3.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정

▶ 「베를린주 대학법」 제65조(이사회)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담당한다.

1. 예산안의 승인과 확정
2. 재정운영의 지침
3. 제2조 제8항에 의한 각종 수수료/요금징수규정의 제정 및 공포
4. 대학평의회에 제안에 의거한 학부와 다른 조직단위의 설치, 변경 및 폐지
5. 대학발전계획 및 설비계획에 대한 입장표명
6. 대학평의회에 제안에 의거한 교원직의 목표규정 확정

그 밖에 이사회는 제67조에 의한 인사사안을 담당한다.

② 그 밖에 이사회는 대학에 지정된 근본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지닌 국가적 사안을 담당한다. 어떤 사안이 근본적이거나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의심스러운 경우 이사회 자체가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조언을 받기 위해 1개의 주요위원회(Hauptkommission), 1개의 인사위원회 그리고 대학병원을 위하여 1개의 재무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그 밖에 추가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이사회는 최종적인 처리를 위한 과업을 그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자치기구로부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에 특정한 사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회의자료와 발언록 포함)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정

제4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제3절 대학회계

제45조(대학회계) ① 대학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3. 대학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자체 수입금

②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정

제46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가와 국립대학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재정·회계 자율의 보장
2.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3.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4.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5. 재정건전성의 확보
6. 건전하고 투명한 예·결산의 운영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정

제47조(대학회계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 대학회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8조(대학회계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하고 대학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평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정

제49조(예비비) ①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학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정

제50조(계속비) ① 총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회 의결을 거쳐 지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1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학평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2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총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대학평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정

제5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총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평의회 동의의 받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정

제5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평의회 동의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정

제55조(결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정

제56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총장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1.]

제57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정

제58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① 총장은 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결산의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예·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대학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정

제59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총장은 소속 교수, 강사, 직원, 조교 등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상담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5.12.7.):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

* 추후 임금으로 포함시킨 추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함

제4절 국립대학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60조(수입금의 자체사용) ①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매년 수입금의 발생 원인과 그 지출용도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자체 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 참고

▶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박정훈(2010), 국립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개정 방안, 경북대학교 교수회 제4차 대학발전포럼

제61조(수입대체경비) 국립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

른 수입대체경비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 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박정훈(2010), 국립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개정 방안, 경북대학교 교수회 제4차 대학발전포럼

제62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총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전출에 대해서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참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정

제63조(재산관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 참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정

제64조(수업료등) ① 총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정

제65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총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

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참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수정

제5장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와 국립대학평가원

제1절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

제66조(국립대학교육협회의 설치) ① 국립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협회의 회원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 참고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회)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회(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67조(국립대학교육협회의 기능) ① 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립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협의
2. 국립대학의 기관인증평가
3.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국립대학의 기초학문육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 개선의 협의
5.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그 밖에 국립대학 간 협조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교육협의회는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수준의 상향표준화를 통한 대학서열의 해소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호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기관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협회에 국립대학평가원을

둔다.

④ 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참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조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8조(정관) 교육협의회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교육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9조(총회) ① 교육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교육협회의 최고결정기관으로 한다.

제70조(임원) ① 교육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교육협의회를 대표하고 교육협의회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교육협의회에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1조(이사회) ① 교육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협의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2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육협의회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3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협의회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협의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교육협의회는 제6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국립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자료 제공) ① 교육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회계연도) 교육협회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8조(사업계획서 등) 교육협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결산보고) 교육협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사항의 준수 의무) 회원은 교육협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교육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협회가 아니면 한국국립대학교육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3조(「민법」의 준용) 교육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과태료) ① 제8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립대학교육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절 국립대학평가원

제85조(국립대학평가원의 설치) ① 교육협회에 국립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교육협회로부터 독립된다.

② 평가원은 이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국립대학평가원의 구성) ① 평가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2. 교육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
3.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연합회가 추천하는 5인

② 평가원의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6장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와 국립대학 간 업무협조

제87조(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 ① 국립대학 대학평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그 연합회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도안: 확장안

제87조(국립대학 의결기구와 자치기구 연합회) ①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의장이나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등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가 모두 참가하는 국립대학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연합회나 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합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국립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합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국립대학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연합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나 연합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국립대학 간의 협력) 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으로부터 입시나 입학, 학사 등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공동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89조(국립대학 간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국립대학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사이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국립대학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대학평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별도의견

제90조(국립대학 간 행정협의회 조직) ① 행정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국립대학의 교·직원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행정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91조(국립대학 간 행정협의회 규약) 협의회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협의회 명칭
2.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립대학
3. 행정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행정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행정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2조(국립대학 간 행정협의회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국립대학의 총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준

제90조(설립과 운영의 기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91조(국립대학 교원 확보기준의 특례 등) ① 국립대학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1인당 학생수(학부 기준) 20인의 범위 안에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유형별로 계열별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 20명
2. 자연과학 15명

3. 공학 15명
4. 예·체능 15명
5. 의학 5명

② 원격대학의 설립과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8장 공립대학 적용의 특례

제92조(공립대학에 대한 준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부터 제26조, 제66조부터 제89조 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93조(공립대학 총장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공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 공립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정 및 임용 등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참고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조 제1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이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와 재구성)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60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지명하여 보한다.

<찾아오시는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 전화 : 02-788-2114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이용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버스 이용

마을 영등포10

간선 153, 162, 260, 362, 461, 463

지선 5615, 5618, 6623, 7613

공항 6030

광역 10(부천), 70-2(부천), 108(고양), 1002(김포), 7007-1(광주), M7625파주